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346
----------	------

2023년 12월 19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10월 16일, 봉양순 의원  
나. 회부일자: 2023년 10월 23일  
다. 상정일자: 제32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3년 12월 1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봉양순 의원)

- 가. 제안이유
- 생산·소비·유통·재활용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도모 등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음.
  - 또한 부칙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의 순환경제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함.
- ‘순환경제’, ‘순환경제사회’, ‘순환원료’의 의미를 규정하고, ‘순환이용’ 활동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
-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수리권을 설정하며, 순환이용을 우선 고려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함(안 제5조).
-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보급·정착될 수 있도록 시책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에너지회수율 등 폐기물 발생 이후 지표뿐만 아니라 폐기물 발생 감량률을 순환경제 지표로 규정하고 시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등을 명시함(안 제9조).
-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순환이용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순환이용센터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안 제14조).
- 순환경제사회 발전 시설 설치·운영, 연구·개발, 산업 육성, 순환자원 사용 사업 등에 자금 융자 및 융자 자금으로 재활용육성자금 등 활용 근거 마련(안 제20조제4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순환경제사회 촉진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4. 검토보고 요지

### 가. 개요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22.12.31.)되고, 2024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의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조항	내 용
제명	· 상위법령에 맞춰 「서울특별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
안 제2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3조	· 기본 원칙 강화(수리권, 순환이용 우선 고려 등)
안 제7조	· 순환경제사회 발전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안 제9조	·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에너지회수율 등 순환경제 목표 설정
안 제11조	· 순환이용센터 설립·운영 근거
안 제14조	· 순환경제사회 전환 관련 사업비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
안 제20조	· 재정적 지원 등

###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제명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순환경제’, ‘순환경제사회’, ‘순환이용’, ‘순환원료’, ‘순환자원’, ‘자원순환’, ‘자원순환산업’, ‘자원순환시설’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현행 조례상 ‘자원순환’의 개념이 환경정책의 하위 범주로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활동 등을 의미한다면, 본 조례안에서는 ‘순환경제’를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체계’로 정의하는 등 대체적인 용어의 정의를 사후관리 개념에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사전 예방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내구성 우수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해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순환이용을 우선 고려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 중 ‘수리권’은 ‘소비자가 스스로 또는 수리 사업자의 수리 대행 등을 통해 보유 중인 제품을 수리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권리’로 현재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제도<sup>1)</sup>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안 2건<sup>2)</sup>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임.

- 안 제7조는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를 보급·정착하기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안 제9조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발생 감량률,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에너지회수율 등의 중장기·단계별 목표를 설정

1) “아이폰도 갤럭시도, ‘수리할 권리’를”(서울경제, 2023.7.8., <https://www.sedaily.com/NewsView/29S1URS8LR>)

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2021.11,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2023.8,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순환 경제사회 전환 성과를 정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동 규정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 담긴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소관부서는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부와 조속한 협의 및 관련 통계 자료 구축 등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1조는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순환이용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규정한 것이고, 안 제21조는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제상·행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음.
- 안 제14조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순환경제특별 회계’의 설치를 명시한 것으로, 세입은 국가 보조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 처분부담금 등 6가지 항목으로, 세출 사업 (안 제12조제1호~제10호)은 폐기물 관련 시설 설치 등 총 10가지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설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자치 입법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종량제 봉투 요금 현실화율이 매우 낮은 현 상황에서 세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보조금이나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특별회계의 도입은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안 제20조제4항은 순환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의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고 제5항은

제4항의 필요 자금을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 등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 정의, 기본원칙, 순환경제 목표 설정, 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음.

다만,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소관 부서는 하위 법령의 제·개정 추이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4. “순환원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6.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8.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장비·설비 등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 라.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순환이용을 위하여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억제, 1회용품 사용 억제, 순환원료 사용 등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와 자치구 등의 효율적인 자원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

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고,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① 시는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순환경제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순환경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등 연도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치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의 중장기·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기물발생감량률(기준연도 대비 해당연도 원단위 폐기물 감량비율을 말한다)
2. 최종처분율(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을 말한다)
3. 순환이용률(폐기물 발생량 대비 순환이용량의 비율을 말한다.)

**제10조(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 순환경제 목표와 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4항에 따른 자치구의 집행계획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자치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이하 “순환이용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용도)** 시장은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시장에게 지급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이하 “징수교부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 협력 사업
7. 자치구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수거·재활용 지원 사업
8. 순환자원을 생산·유통·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9. 재활용 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활용)** ① 시장은 징수교부금을 제12조에 따른 용도 범위에서 자치구,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매년 구청장 등으로부터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대상사업을 확정한다.

**제14조(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순환경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법 제36조제8항에 따른 교부금
4. 차입금
5. 제3항 각 호의 사업의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 사업은 제1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다.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시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시 자원순환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 자원순환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환경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2.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4. 자치구 청소행정 분야 과장급 이상 공무원

⑤ 위원은 시장이 회의 개의 시 위촉 또는 임명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 또는 해임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13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활용에 관한 사항
2.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자금 융자 등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시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가 중단되는 등 수집·운반·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시민 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 처리 등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자치구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기물 감량, 재사용·재활용·재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해 사업자, 시민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게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2.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은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 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법제상·행정상 조치 등)**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